

문서번호	SLS-ESG-03
제정일자	2024. 7. 1.
개정일자	2026. 6.22.
개정번호	2

신화로직스 윤리경영 규범

결 재	기획실장	부사장	사장	대표이사
협조	PDI사업이사 : 재무이사 : 운송사업본부장 :			

2026. 6. 22

(주)신화로직스

제/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비고
1	2024. 7. 1	신화로직스 윤리경영 규범	제정
2	2026. 6.22	윤리경영 규범 개정	
3			
4			
5			
6			
7			
8			
9			
10			

결재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직책			
	성명			
	서명			
	일자			

제1장 총칙

1. 목적	4
2. 적용대상	4
3. 윤리규범	4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4. 직장윤리	5
5. 공과 사적 구분	5
6. 이해상충 방지	5
7. 국제규범 준수	5
8. 임직원 상호관계	6
9. 투명한 회계관리	6

제3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10. 투명경영 반부패	6
11. 공정한 거래 및 반독점	7
12. 내부 고발자 보복금지	7
13. 위조품 사용방지	7
14. 책임있는 원자재 관리	7
15. 정보보호	8
16. 지적재산권 보호	8
17. 수출제한 규제 준수	8
18. 기업경영 정보 공개	8

제4장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19.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9
20.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9
21.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9
22. 징계대상	9
23. 징계내용	10
24. 윤리규정 위반 제보자에 대한포상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범은 (주)신화로직스(이하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거래관계 이해관계자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범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 및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대리점, 용역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윤리경영 원칙)

우리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1. 국내외 모든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2.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한다.
3.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과 상호 투명한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4.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5. 노사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현한다.
6.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7. 회사는 법정 최저 고용 연령 미만의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8.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 (직장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방침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수행 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3.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4. 모든 의사결정 및 업무기록은 정확하게 작성·보관해야 하며, 무단 훼손·은폐·조작을 금지한다.
5. 임직원은 회사의 대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5조 (공·사의 구분)

1.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청탁, 강요 행위를 금지한다.
3.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모든 거래와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제6조 (이해상충 방지)

1. 직무 수행 중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즉시 상급자 또는 감사 부서에 보고한다.
2.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약속, 제공, 수수 행위를 금지한다.
3. 회사 승인 없이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할 수 없다.

제7조 (국제규범 준수)

1. 국내외에서의 모든 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며 독과점 행위를 일삼지 않는다.
3.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공모 또는 자행하지 않는다.
4. 국가간 체결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수출 통제, 규제, 제재 및 금수 조치를 따른다.
5.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위조품, 부품 등을 생산하지 않는다.

제8조 (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학벌·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상호간에는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정한 청탁행위와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4.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저해하는 지시라고 판단될 경우 그 부당성을 소명하되 개선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상급자나 감사부서에 상담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투명한 회계관리)

1.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4.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0조 (투명경영 반부패)

1. 임직원은 국내외 부패방지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2. 임직원은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이나 자금세탁을 하지 않는다.
3.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횡령이 허용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4.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특혜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 내용은 회사 및 협력업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11조 (공정한 거래 반독점)

1.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거래처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5. 거래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위 내용은 회사 및 협력업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12조 (내부고발자 보복금지)

1.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한다.
2. 내부고발자의 신원보안을 누설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서 징계처분한다.
3. 내부고발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회사는 선의의 내부고발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위조품 사용방지)

1. 승인되지 않은 위조된 부품 등이 공급망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회사는 협력사가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14조 (책임있는 원자재 관리)

1. 회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 원재료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급망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자재 및 부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 (정보보호)

1.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고객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취급자는 정규적인 교육을 이수한다.

제16조 (지적재산권 보호)

1.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지식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제17조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1. 회사는 국제적 무역 제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준수한다.
2.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3. 원산지 증빙서류 등 관련문서를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며 필요시 현황파악 활동에 협조한다.

제18조 (기업경영 정보 공개)

1.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한다.

제4장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19조 (윤리규정 위반사항 신고)

1.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된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
2. 회사는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3.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1.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이 사실을 관련 서류 및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부서는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 연루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한다.
4. 협력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즉시 조치를 의뢰하고 회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변상 조치를 한다.

제21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1.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사내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징계위원회 규정에 없거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 징계대상 및 징계 내용은 아래 22, 23조와 같다.

제22조 (징계대상)

1.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등
2. 사내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직권을 이용한 금품요구,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제23조 (징계내용)

1.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시 : 미신고자 해당 직원 징계조치, 협력업체 거래 중단
2. 직권을 이용 금품 요구 시 : 해당 직원 징계 조치
3. 직위를 이용한 청탁, 압력행사 시 : 징계위원회 심의 후 징계여부 결정

제24조 (윤리규정 위반 제보자에 대한 포상)

1.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확인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포상할 수 있다.
2. 회사는 윤리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준수한다.